

# 국유재산 [ ]사용료 [ ]매각대금 [ ]대부료 [ ]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	재산의 표시			신청면적 (㎡)	신청사유	분납방법	비고
	①	②	③				
신청내용	가. 사용료, 대부료의 경우					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나. 매각대금, 변상금의 경우					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, 제35조제2항, 제36조제6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([ ]사용료, [ ]매각대금, [ ]대부료, [ ]변상금)을(를)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중앙관서의 장등**     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### 유의사항

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, ② 지목, ③ 면적을 적고,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, ② 유형(법 제5조제1항제6호 기목은 (가), 같은 호 나목은 (나), 같은 호 다목은 (다), 같은 호 라목은 (라)로 기재),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※ 사용료(대부료)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
※ 매각대금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
※ 변상금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